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2011.3.1. 제정
2012.3.1. 개정
2013.3.1. 일부개정
2013.9.1 일부개정
2014.3.1. 일부개정
2016.3.1. 일부개정
2017.7.1. 일부개정
2018.3.1. 일부개정
2018.12.1. 일부개정
2020.3.1. 일부개정
2020.9.1. 일부개정
2022.3.1. 일부개정
2023.10.1. 일부개정
2024.4.1. 일부개정
2024.9.1. 일부개정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제1장 학사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본교 대학원 학칙 및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 내에서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교과목 및 수업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다.

② 학기별 학점 취득은 다음과 같다.

하한 취득학점	상한 취득학점	초과 취득학점	연구지도학점
석사 2학기 동안 3학점 박사 3학기 동안 3학점	15학점	<삭제>	2학점

제3조(이수과목 지정 및 면제) ① 신입생은 입학 후 20일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선수과목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별로 선수과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학위취득 요건) ① 석사과정 학생은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학위청구논문이나 연구보고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② 박사과정 학생은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 ①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논문 학위청구 : 3학기 종료 이전에 ‘석사학위 논문 제안서(프로포절)’를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포함한 본교 전임교원 3인의 심사위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개정 2022. 3. 1., 2023.

10. 1, 2024. 3. 1.>

2. 연구보고서 학위청구 : 위 호를 충족하지 못한 자는 '연구보고서'로 학위심사를 청구해야 함

②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청구하기 위하여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SCI급 학술지(SCIE, SSCI 포함) 혹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국내 학술지)에 최소 1편 이상을 주저자로 게재 또는 게재 확정된 자

2.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1회 이상 발표한 자

3. 박사학위 논문 작성 전, '박사학위 논문 제안서(프로포절)'를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포함한 본교 전임교원 3인의 심사위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신설 2023. 10. 1.>

제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전기는 4월 말일, 후기는 10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① 각 과정별 심사용 논문(가제본된 것)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 3부

2. 박사 5부

② 논문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

2.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3.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4.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주소록(해당자)

③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료는 따로 정한다.

제8조(심사용논문의 분량) 논문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제9조(심사용논문의 용지 및 판형) 용지는 백지를 사용하고, 크기는 4·6배판(대략 257×188mm)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심사용논문의 개요 및 번역본 제출) ① 논문개요는 논문 목차 앞에 오게 한다. <개정 2023. 10. 1.>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국문으로 된 경우에는 논문개요를 외국어로 작성하고,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국문개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완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심사를 중지하고 논문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후 보완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논문심사 위원) ①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본교 전임교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1인까지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

③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본교 전임교원 3인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2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

④ 지도교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원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갖는다.

⑤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13조(박사학위 논문심사 회수) 박사과정 논문심사는 최소한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재심사) 논문심사 결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완제본논문의 용어) ① 각 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삭제 <2023. 10. 1.>

③ 각 학위청구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완제본 논문의 온라인 등록) 완제본 논문을 제본하여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과 논문초록을 등록하고,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

제17조(완제본논문의 제본 및 제출) ①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면 대학원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제본하여 소정기일 내에 지정된 부서에 일정 부수를 제출한다.

② 완제본논문 원본은 심사위원(장)의 검인을 받아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제본하여 본인이 보관한다.

③ 석사학위 논문 중 3부는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나머지는 백색 또는 회색의 부드러운 표지로 한다.

④ 박사학위 논문은 전부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금박 인쇄로 한다.

제18조(완제본논문의 판형 및 지질) 완제본논문의 규격은 4·6배판으로 하며, 지질은 모조지 80파운드로 한다.

제19조(완제본논문의 장정 및 양식 차례) 완제본논문의 표지, 내지 등의 장정(裝幀), 작성 양식, 차례 등은 일반대학원 논문양식을 따른다.

제20조 삭제 <2023. 10. 1.>

제21조(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학칙 및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제2장 종합시험

제22조(응시자격) 종합시험은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18학점 이상을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23조(시험방법) ①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시험을 기본으로 한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과정 및 학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되 시행하기 이전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조(합격) ① 각 학과 필수과목과 전공심화선택 과목 중 3과목을 합격하여야 한다. 단, 기술금융 전공트랙군에서 4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기술금융 전공트랙군 과목도 전공심화선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4. 9. 1.>

② 1차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합격으로 한다.

③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한해 2차 구술시험을 시행하며, 구술시험의 방법과 합격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과의 복수학위

제25조(과정)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하 MOT)에서 2년 과정을 마친 학생이 선발을 통해 경영전문대학원(이하 경전원)에서 1년의 과정을 이수하면 두 개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26조(교류범위) 양 대학원의 복수학위 교류범위는 협약서에 따른다.

제27조(지원 및 선발) ① 3학기를 마친 석사과정 학생에 한하여 소정의 기간에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의 허가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③ 경전원에서 본 대학원으로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자체 절차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제28조(진입) ① 복수학위 과정 진입 시기는 3월로 한다.

② 본 대학원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복수학위 과정에 진입할 수 있고, 유예기간 없이 바로 진입하여야 한다.

③ 복수학위 진입 예정인 학생이 본 대학원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복수학위 과정에 진입할 수 없고, 진입 자격도 상실하게 된다.

제29조(휴학의 제한) ① 복수학위 과정 진입 후 휴학할 수 없다.

② 다만 질병, 출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허락을 얻어 최대 1년까지 휴학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휴학은 1년 단위로 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0조(등록 및 중도포기) ① 복수학위 과정 기간 내의 등록금은 복수학위 대학원에 납부한다.

② 복수학위 진입 전 소정의 기간에 등록 포기(진입 포기)를 신청할 경우 본 대학원으로 수료연구생 등록금을 납부하고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본 대학원의 학위를 수여한다.

③ 복수학위 진입 후 소정의 기간에 중도 포기를 신청할 경우 본교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고, 해당 학기의 학위수여 일정에 맞추어 본 대학원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31조(학점인정) 복수학위 진입 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별도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2조(경전원 복수학위 취득요건)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필수이수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2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3조(경전원 학생의 복수학위 취득요건) ①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본 대학원에서 요구하는 필수이수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2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본 대학원으로 진입한 학생에 대하여 종합시험과 학위청구논문(혹은 연구보고서)제출을 면제한다.

제34조(학위수여) ① 본 대학원생에 대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학위수여는 복수학위 교과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연기한다.

② 본 대학원생이 경영전문대학원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본 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의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제35조(협약갱신) 본 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과의 복수학위협약은 2년마다 협약을 갱신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 제10조, 제23조, 제26조 개정)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2항, 제24조 개정 및 제25조 삭제)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항, 제 6조 개정 및 제27조 신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삭제, 제5조 2항, 제24조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개정, 제22조 제2항 신설)
2. (경과조치) 제4조 제1항, 제23조 제1항은 2016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개정, 제2호 삭제, 제4조 제2항 제2호 개정, 제3호 신설, 제3장 신설, 제24조 내지 제32조 신설)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개정)

부 칙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신설, 제2장 삭제, 제3장 개정)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 제2장 신설, 제22조 내지 제32조 조 번호 변경)
2. (경과조치) 제5조의 인권과 성평등 교육 이수 요건과 제5조 제2항 제2호는 2021년 3월 1일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
2. (적용례) 제5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부터 모든 재적생에게 적용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제10조, 제12조 개정, 제15조 제2항, 제20

조 삭제)

부 칙

1.(시행일) 이 내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5조 개정)

2.(경과조치) 이 내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4조 개정)